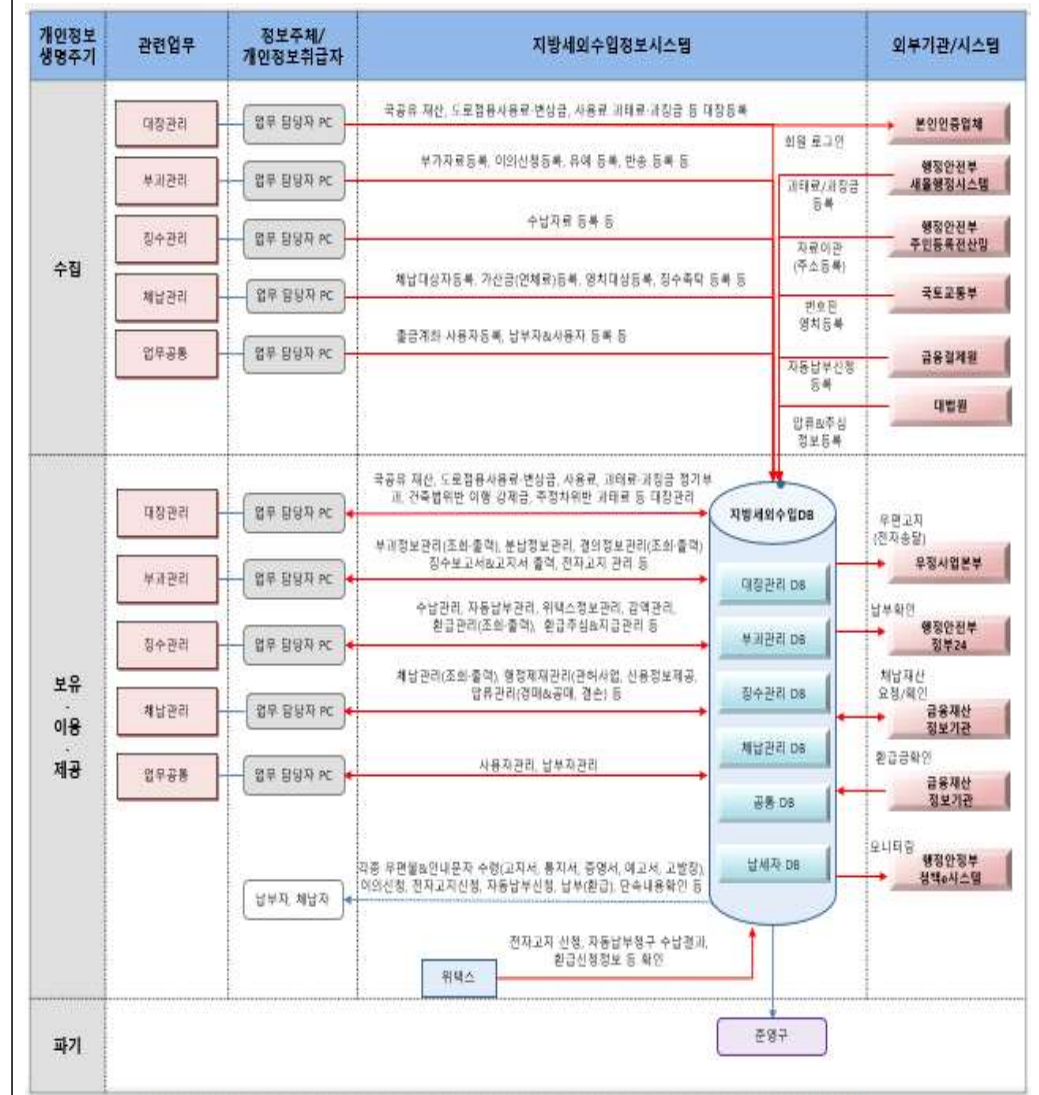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						
공공기관 명		울산광역시 북구				
평가기관		(주)씨에이에스	평가 기간	2026.06.01 ~ 2026.06.30	평가 예산	☐ 1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평가 대상 시스템 개요	시스템명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 일정	2026. 1. ~ 2026. 12
	추진개요 및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채납관리 등 세무 업무처리 지원 - 세외수입 관계법 개정 등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사용자 중심의 편의 기능 제공 - 신규 구축된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성능 향상 필요				
	추진성격	대상여부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5만 명 이상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50만 명 이상 개인정보파일 연계 처리		추진예산	102,650,562천원 (VAT 별도)
		추진주체	행정안전부			
		추진근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업무의 정보화)		추진유형	☐ 신규 구축 ☐ 변경(고도화) ☒ 운영
		신기술 유형	-			
	주요내용	-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 세외수입 관련 법·제도 개정 등 외부환경 적기 반영 -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의견수렴 및 기술지원				
	운용체계 변경내용	해당하지 않음				
개 인 정 보 파 일 개 요	파일명	정보주체 수	개인정보 항목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처리 목적
	(세외수입) 감액관리	35,580	이름,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토교통부	세외수입 감액관리
	(세외수입) 결손관리	11,113	이름, 집주소, 핸드폰, E-Mail, 직장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 건설공제조합, 대법원,	세외수입 결손관리

				PG사(VAN), 한국자산관리 공사, 국세청, 관세청, 한국신용정보원	
(세외수입) 과오납관리	30,217	이름, 집주소, 핸드폰, E-Mail,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예금주정보(계좌번호, 예금주명)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 행정안전부(청백e)	세외수입 과오납관리	
(세외수입) 부과관리	336,876	이름, 집주소, 핸드폰, E-Mail, 직장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토교통부	세외수입 부과관리	
(세외수입) 수납관리	323,892	이름, 집주소, 핸드폰, E-Mail, 직장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결제원	세외수입 수납처리	
(세외수입) 압류관리	62,457	이름, 집주소, 핸드폰, E-Mail, 직장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 건설공제조합, 대법원, PG사(VAN), 한국자산관리 공사, 국세청, 관세청, 한국신용정보원	세외수입 압류관리	
(세외수입) 체납관리	132,349	이름, 집주소, 핸드폰, E-Mail, 직장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서울행정시스템	세외수입 체납관리	
개인정보 처리 흐름분석	1. 개인정보 처리 흐름 -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은 지방세외수입 부과, 징수, 수납, 체납관리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안전부 등과 통합연계시스템을 통해서 과세자료정보, 납세자정보, 체납자정보, 사용자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유 및 이용함.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외수입 업무담당자는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부과/징수/체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DB에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 - 지방세외수입 관련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이 모두 준영구이므로 DB에서 삭제하지 않음 2. 총괄 개인정보 흐름도				



영
향
평
가
기
준

평
가
기
준
변
경
사
항
및
사
유

-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제2025-7호, 2025.9.5., 일부개정) 제10조(평가영역 및 평가분야), 제11조(평가항목)에 의거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법령 개정 및 대상 시스템의 특성에 따른 평가항목을 가감하여 평가 항목으로 구성함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국가표준보급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한(‘22.3) 평가항목은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단, 행정안전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지표” 에서 제시한 “자치단체 점검내용”을 포함하여 평가함.
 -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3장)의 13개 항목
 - .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4장)의 16개 항목
-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5장)은 평가 대상시스템과 해당 사항이 없어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7개 평가분야 37개 항목)

주
요
평
가
기
준

- 2025년 10월 2일에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반영
- 2025년 10월 31일에 시행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반영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2025년 10월 개정) 준용
- 본 평가기관 영향평가 수행방법론 및 대상시스템 특성에 따른 평가지표 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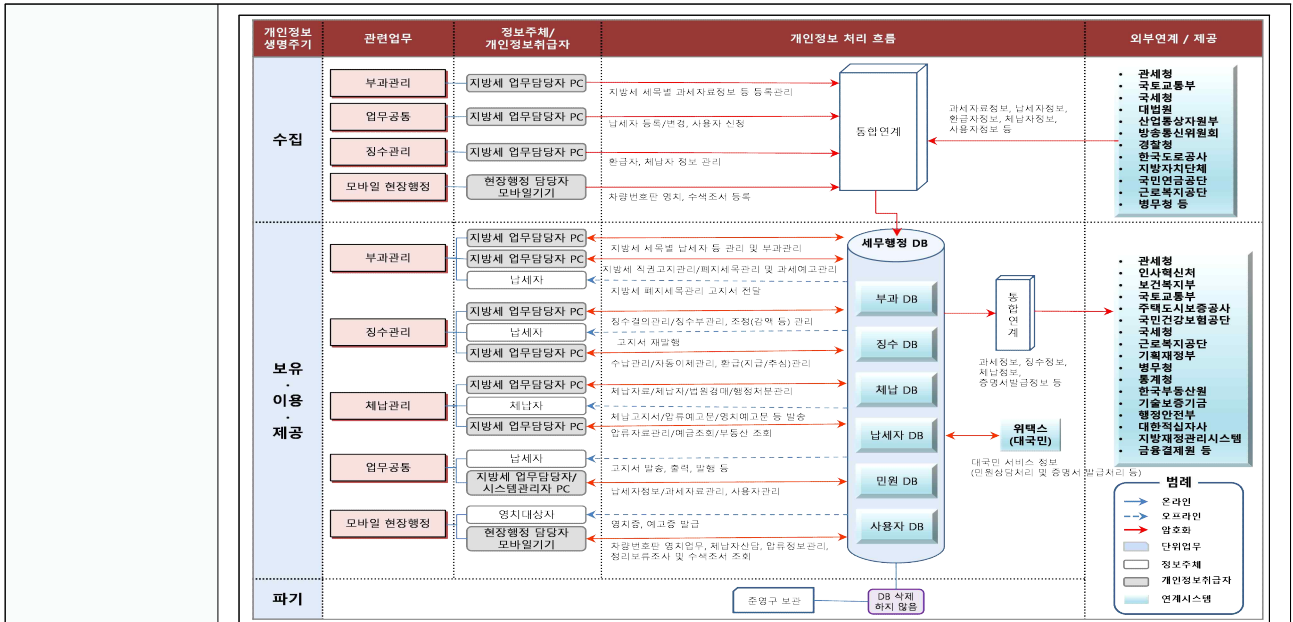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평가		1.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분석평가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파일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정보화)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자동차관리법』 제74조(과징금의 부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제72조(변상금의 징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제81조(변상금의 징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음 2.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술적 조치 사항에 따른 분석평가 -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지방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 기준 및 보유 목적에 부합된 기간(준영구)으로 산정하여 보유하고 있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하고 있음 - 정보주체 동의없이 처리하는 내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필수 기재사항 누락에 따른 법규위반 발생 및 정보주체의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 (3.1.9) -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필수 기재사항 누락에 따른 법규위반 발생 및 정보주체의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 (3.4.1)
위험 요인 에대 한개 선조 치	주요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조치 방안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제3자 제공 내역 공개 (2.3.2) :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서 통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제3자 제공을 하고 있는 그 내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추가 - 정보주체 동의없이 처리하는 내역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추가 공개 (3.1.9)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 - 개인정보처리 위탁 내용 공개 (3.4.1) :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서의 개인정보처리 위탁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
	위험요소에 따른 정보주체 인지사항	해당없음
평가결과		-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1장)는 10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1개 항목을 제외하고 5개 항목은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4개 항목을 부분 이행 하고 있음 - 대상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2장)는 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1개 항목을 제외하고 5개 항목은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1개 항목을 부분 이행 하고 있음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3장)는 1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6개 항목을 제외하고 9개 항목을 이행하고 있으며, 2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하고 있음. -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4장)는 2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6개 항목을 제외하고 21개의 항목을 이행하고 있음. - 대상기관의 특정 IT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5장)는 해당사항 없어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서는 제외함.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

공공기관 명		울산광역시 북구				
평가기관		(주)씨에이에스	평가 기간	2026.06.01 ~ 2026.06.30	평가 예산	☐ 1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평 가 대 상 시 스 템 개 요	시스템명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 일정	2026. 1. ~ 2026. 12
	추진개요 및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부과·징수·채납관리 등 세무 업무처리 지원 - 지방세 관계법 개정 등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사용자 중심의 편의 기능 제공 -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성능 향상 필요				
	추진성격	대상여부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5만 명 이상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50만 명 이상 개인정보파일 연계 처리		추진예산	102,650,562천원 (VAT 별도)
		추진주체	행정안전부			
		추진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지방세업무의 정보화)		추진유형	☐ 신규 구축 ☐ 변경(고도화) ☒ 운영
		신기술 유형				
	주요내용	- 지방세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 지방세 관련 법·제도 개정 등 외부환경 적기 반영 -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의견수렴 및 기술지원				
	운용체계 변경내용	해당하지 않음				
개 인 정 보 파 일 개 요	파일명	정보주체 수	개인정보 항목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처리 목적
	(지방세) 등록면허세관리	39,479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집연락처, 물건지, 면허명, 면허증, 은행명, 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허가번호		-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관리
	(지방세) 자동차세 관리	81,977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E-Mail,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 차량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장애정보		-	자동차세 과세자료관리

(지방세) 재산세관 리	329,073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 번호, 집주소, 전자납부번호, 물 건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주택도시보증 공사, 관세청, 국민건강보험 공단,국민연금 공단,국세청, 근로복지공단, 기획재정부, 병무청,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기술보증기금, 행정안전부	재산세 과세자료 관리
(지방세) 주민세관 리	1,608,443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 번호, 집주소, 핸드폰	대한적십자사	주민세 과세자료 관리
(지방세) 지방소득 세 관리	117,475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 번호,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 전자납부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관리
(지방세) 지역자원 시설세 관 리	328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 번호, 집주소, 집연락처, 물건지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자료 관리
(지방세) 취득세관 리	242,292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 번호, 집주소, 핸드폰, 전자납부 번호	국토교통부, 관세청,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농림축산식품부, 주택도시보증 공사,	취득세 부과 관리
(지방 세) 수납관리	554,240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 번호, 집주소, 집연락처, 직장연 락처, 직장주소, 핸드폰, 은행 명,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과 세정보	지방재정관리 시스템(e호조), 금융결제원	지방세 수납관리
(지방 세) 감액관리	106,042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 번호,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 사업자명, 은행명, 계좌번호, 과 세정보	-	지방세 감액 및 수정 관리
(지방 세) 환급관리	159,523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 번호, 집주소, 환급금액, 은행명, 계좌번호	관세청,국세청, 시금고은행,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환급관리

	(지 방 세) 체납관리	189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 번호,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 직업, 직장명, 예금주명, 계좌 번호, 체납금액, 과세정보	서울행정시스 템(행안부), e-하나로민원 (행안부), e호조(행안부) 법무부,국토부 금융정보분석 원, 국세청,관세청	지방세 체납관리
	(지 방 세) 압류관리	53,715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 번호, 핸드폰, 집주소, 직장명, 직장주소, 예금주명, 계좌정보, 자산정보, 체납금액, 과세정보	대법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국토교통부, 관세청,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	지방세 체납처분 관리
	(지 방 세) 정 리 보 류 관리	18,320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 번호, 집주소, 핸드폰, 자산정보, 납세정보, 행정처분정보, 신용정 보	-	지방세 정리보류 관리
	(지 방 세) 납 세 자 관 리	391,368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 번호,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 과세정보	-	지방세 납세자정보 관리
	(지 방 세) 제 증 명 관 리	133,612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 번호,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 납세정보	-	지방세 제증명 발급 관리
	(지 방 세) 자 동 이 체 관리	2,807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 번호, 계좌번호, 집연락처, 집주 소, 과세정보	-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 등 관리
	(지 방 세) 행 정 제 재 관리	1,113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 번호,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 체납정보	-	행정제재 관리
개인정보 처리 흐름분석	1. 개인정보 처리 흐름 - 차세대 표준지방세시스템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 안전부 등과 통합연계시스템을 통해서 과세자료정보, 납세자정보, 환급자정보, 체납자정보, 사용자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유 및 이용함. - 울산광역시 북구지방세 업무담당자는 지방세에 대한 부과/징수/체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DB에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 - 차세대 지방세 관련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이 모두 준영구이므로 DB에서 삭제 하지 않음. 2. 총괄 개인정보 흐름도				



영 향 평 가 기 준	평가기준 변경사항 및 사유	-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제2025-7호, 2025.9.5., 일부개정) 제10조(평가영역 및 평가분야), 제11조(평가항목)에 의거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법령 개정 및 대상 시스템의 특성에 따른 평가항목을 가감하여 평가 항목으로 구성함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국가표준보급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한(22.3) 평가항목은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단, 행정안전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지표” 에서 제시한 “자치단체 점검내용”을 포함하여 평가함.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3장)의 17개 항목 .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4장)의 27개 항목 -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5장)는 평가 대상시스템과 해당 사항이 없어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7개 평가분야 37개 항목)
	주요 평가기준	- 2025년 10월 2일에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반영 - 2025년 10월 31일에 시행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반영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2025년 10월 개정) 준용 - 본 평가기관 영향평가 수행방법론 및 대상시스템 특성에 따른 평가지표 가감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평가		1.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분석평가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파일은 『지방세법』 제49조, 제130조,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음 2.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술적 조치 사항에 따른 분석평가 - 차세대 표준지방세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 기준 및 보유 목적에 부합된 기간(준영구)으로 산정하여 보유하고 있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하고 있음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준영구로 산정되어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는 하고 있지 않음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	주요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조치 방안	-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 (2.3.2)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통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제3자 제공을 하고 있는 내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추가 - 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 처리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 보완 (3.1.9)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 - 위탁 내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3.4.1)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처리 위탁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
	위험요소에 따른 정보주체 인지사항	해당없음
평가결과		•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1장)는 10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1개 항목을 제외하고 5개 항목은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4개 항목을 부분이행 하고 있음 • 대상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2장)는 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1개 항목을 제외하고 5개 항목은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1개 항목을 부분 이행 하고 있음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3장)는 1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6개 항목을 제외하고 9개 항목을 이행하고 있으며, 2개 항목을 부분이행 하고 있음. •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4장)는 2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6개 항목을 제외하고 21개의 항목을 이행하고 있음. • 대상기관의 특정 IT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5장)는 해당사항 없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서는 제외함.